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5 선고 2015가단506304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5. 10. 8.

판결 선고2016. 1.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957,560원과 그 중 35,542,877원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12%의,

나.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5,542,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는 36,957,560원과 그 중 35,542,877원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5,542,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국민은행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4,050만 원, 보증기간 2010. 7. 26.부터 2020. 7.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율 등에 의한 손해금 및 원고의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2.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피고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2010. 7. 22. 국민은행으로부터 4,500만원을 대출기간 2010. 7. 26.부터 2020. 7. 26.까지,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피고 A는 원금 상환 연체로 2011. 10. 4.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23.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42,646,9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A로부터 2012. 2. 23. 102,520원, 2013. 4. 18. 7,001,534원을 회수하여, 보증채무 이행금 잔액이 35,542,877원이고, 2013. 4. 18.까지 확정지연손해금은 1,128,493원이다.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286,19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B, C은 피고 A와 금융기관에 허위의 재직관련서류, 주택임대차계약을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 D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피고 E에게 대가를 받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되어 줄 것을 각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아, 아래와 같이 허위의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고 이를 피고 A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 D은 그가 아내인 F 명의로 운영하는 'G'의 사업자 명의로 피고 A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재직증명서가 작성되도록 하였으며, 피고 E은 피고 A와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성함으로써, 공모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모두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018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24, 대법원 2013도863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6,957,560원(보증채무 이행금 35,542,877원+확정 지연손해금 1,128,493원+채권보전비용 286,190원)과 그 중 보증채무 이행금 잔액 35,542,87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 다음 날인 2012. 2.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5.까지는 연 12%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인 35,542,877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 항변

(1) 주장 원고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수탁자인 국민은행은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 A가 회사에 재직한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못하여 공적 증빙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 A가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대출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재직회사로 기재된 곳에 유선으로 재직 여부와 급여 내역에 대한 진위 확인만을 한 다음 대출을 승인하여 주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 또는 그 밖에도 피고 E은 피고 B, C에게 속아 피고 A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변제할 능력이 있고 다만 그가 적금리로 대출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450만 원만을 분배받았으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자력이 전혀 없어 사실상 혼자서 전부 배상을 하여야 하는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50%로 제한하여야 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E은 고의에 의하여 사기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편취한 금전을 공동불법행위자인 나머지 피고들과 전부 나누어 가졌는바, 가사 원고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피고들로 하여금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 항변

(1) 주장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978호로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가 이를 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오히려 이는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5059 판결에 기한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김예영